

시설급여 평가지표 일반사항

Q1

시설 전산 프로그램 이용 중으로 기록물 출력 없이 기관 전산으로 평가 받을 수 있나요?

- 시설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를 생산·관리하는 경우 2021년 시설평가 매뉴얼 일반사항/3.평가방법/마.항목에 따라 개별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통한 로그인을 원칙으로 하며 국가 제공 전산프로그램(1365,VMS)은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평가 현장에서 자료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위의 방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기록물은 전산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 일반사항

Q2

포괄승계(양도양수) 시 평가지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재수립해야 하나요?

- 장기요양기관(시설)을 포괄승계(양도양수) 시 평가지표8(7)건강검진, 평가지표19(18)감염병관리 기준①의 수급자 결핵검진 포함 건강진단에 대해 기존 기관의 자료가 확인된다면 대체하여 인정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그 외 시설급여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은 새로운 기관운영 사항에 맞게 재수립 필요)

시설급여 평가지표 일반사항

Q3

동일법인·동일대표자 기관 내 수급자 전원, 직원 이직 시 평가지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재수립해야 하나요?

- 동일법인·동일대표의 시설급여기관으로 전원 시 '결핵 검사를 포함한 건강진단(평가지표19(18) 감염병관리 참고)'을 제외한 부분은 신규 수급자에 준하여 평가합니다.
- 동일법인·동일대표 장기요양기관 내 이직의 경우 직원의 건강진단에 대해 기존 기관의 자료가 확인된다면 대체하여 인정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1(1) 운영규정

Q4

운영규정 항목 중 '조직(직제, 업무분장 등)'에서 업무분장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인정되나요? 아니면 업무분장표를 작성해야 하나요?

- 운영규정 상 업무분장은 직제와 직종에 따른 업무내용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 시설급여 평가매뉴얼에서 별도로 업무분장표를 확인하는 지표는 없으나, 평가지표25(24) 수급자의 알권리 보장에서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종사자 근무체계, 급여제공직원 현황 등)를 기관 내부에 게시하였는지 확인하므로 기관운영을 위해 업무분장표 작성을 권해드립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1(1) 운영규정

Q5

운영규정 중 공단 수가의 잦은 변동에 따라 규정항목 ④의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는데 이 때마다 운영규정 개정을 해야 하나요?

- 평가지표1(1)운영규정의 기준①의 운영규정 중 규정항목④의 시설급여비용 변동에 따른 이용료 변동에 대해서는 운영규정 개정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료 변경 시 규정항목 ③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중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이 달라짐에 따라 보호자 등에게 적극 안내했는지에 대해 확인합니다. (공단 수가 인상에 따른 변동사항은 전체공지도 인정, 비급여 변동에 대한 내용은 개별적 안내 필수)

시설급여 평가지표3(3) 운영위원회

Q6

퇴소한 수급자의 보호자도 운영위원회에 포함되나요? 대표자가 운영위원회 위원이라면 어느 분야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 시설 거주자 대표는 시설에 입소한 수급자 대표를 의미하며,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는 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의 보호자 대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퇴소한 수급자와 그 보호자는 평가 시 운영위원회의 수급자·보호자 대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대표자는 기관의 관계자이므로 외부인사로 인정하지 않으며, 시설장, 종사자 대표에도 속하지 않음으로 내부인사로도 불인정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3(3) 운영위원회

Q7 운영위원회의 적합한 인원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 급여 수준 향상 및 투명한 기관운영을 위해 기관과 관계된 '내부인사' 뿐 아니라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며, 외부인사는 3개 분야(공생 2개 분야)에 각 1~2명(외부인사 중 후원자대표 및 지역주민은 합하여 2명 초과 구성 불가) 반드시 포함해야 평가기준을 충족합니다.
- 내부인사는 시설의 장, 시설 거주자 대표, 시설 종사자의 대표이며, 외부인사는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사회복지 공무원, 후원자 대표, 지역주민, 공익단체 추천인,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입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3(3) 운영위원회

Q8 운영위원회에서 수급자 대표 또는 보호자 대표의 의견을 수렴 및 조치한 경우, 평가지표3(3) 운영위원회 기준③번과 평가지표29(28) 노인인권보호 기준④번 모두 인정되나요?

-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도출된 회의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수급자(보호자) 대표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치한 것이 회의 내용에서 확인되는 경우, 중복하여 인정합니다.
- 다만 각 기준별 확인사항 및 실시 횟수가 다르므로 세부 기준을 추가로 확인하여 평가에서 인정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3(3) 운영위원회

Q9 운영위원회에서 시설 종사자의 대표를 참여시켜 처우개선을 위한 의견을 파악 및 반영한 경우, 평가지표3(3) 운영위원회 기준③번과 평가지표11(10) 직원권익보호 기준④번 모두 인정되나요?

-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도출된 회의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종사자 대표의 의견 파악 및 반영한 것이 회의 내용에서 확인되는 경우, 중복하여 인정합니다.
- 다만 각 기준별 확인사항 및 실시 횟수가 다르므로 세부 기준을 추가로 확인하여 평가에서 인정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3(3) 운영위원회

Q10

운영위원회에서 사업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기연도 계획에 반영한 경우, 평가지표3(3) 운영위원회 기준③번과 평가지표2(2) 운영계획 및 평가의 기준④번 모두 인정되나요?

-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도출된 회의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사업결과 평가 및 차기연도 계획에 반영한 것이 회의 내용에서 확인되는 경우, 중복하여 인정합니다.
- 다만 각 기준별 확인사항 및 실시 횟수가 다르므로 세부 기준을 추가로 확인하여 평가에서 인정합니다.

COVID-19

시설급여 평가지표3(3) 운영위원회

Q11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이라 대면이 어려운데 운영위원회 회의를 어떻게 진행하나요?

-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이상에 따라 외부인의 기관 출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1, 2분기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될 시 평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나 3분기부터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대면하여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다자간 영상통화나 다자간 메신저(모바일 메신저) 또는 서면의 방법으로 개최한 경우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인정함을 안내드립니다.
- 비대면 회의 시에도 외부인사 중 1인 이상 참석은 필수이며 확인사항(일자, 회의내용, 참석자(비대면 시 서명은 미확인), 참석자 발언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게시위치 :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알림·자료실/공지사항/게시물번호 60606
"코로나19 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한시적 적용방법(5차) 안내"

시설급여 평가지표6(5) 경력직

Q12

동일인이 직종을 변경하여 근무하거나 퇴직 후 재입사 하였다면 경력직으로 인정되나요?

-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계속 근무하면서 직종만 변경하거나, 동일 법인·동일대표 장기요양기관으로 옮기는 경우 연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퇴직 후 재입사하는 경우, 공백 없이 근무했다면 연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해당 월에 청구내역이 있다면 '근무'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7(6) 인적자원 개발

Q13

2개 기관이 통합되어 B기관의 직원이 A기관에 소속되었는데, 신입직원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B기관 입사 당시 모든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 기관 통합으로 B기관 직원들이 A기관으로 시·군·구에 인력신고 되었다면, B기관 직원은 A기관의 신입직원이 됩니다. A기관은 이들에게 입사일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담당업무내용에 대해 교육해야 합니다.
- 평가 시에는 지표적용기간동안 입사한 신규직원에게 대해 교육 시기와 교육 내용(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담당업무내용)에 대해 면담하여 평가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7(6) 인적자원 개발

Q14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에 노인인권보호, 학대예방교육도 포함이 되나요?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노인학대예방교육 및 인권교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인권교육)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교육으로서 불인정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7(6) 인적자원 개발

Q15

근무하는 직원이 직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규 직원교육으로 확인하여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담당업무를 모두 교육해야 하는지, 변경되는 담당업무내용에 대해서만 교육을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직종 변경한 경우 신규직원은 아니나 신규직원 교육 중 중복된 내용을 제외한 업무분장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변경된 직종에서의 업무에 대해 숙지해야 합니다.
- 평가지표7(6) 인적자원 개발 기준②, ③번의 내용인 신규직원 교육, 모든 직원에 대한 교육은 해당 직원과의 '면담'을 통해 평가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7(6) 인적자원 개발

Q16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란 어떤 교육이 해당되나요?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2조(근무인원수 산정방법) 제1항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교육(종사자의 면허 및 자격증, 안전 등과 관련된 의무교육 및 보수교육 제외,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따른 종사자 치매전문교육 제외, 자격증 취득 교육 제외한 직무 관련 교육)만 인정이 됩니다.
- 외부기관에 가서 이수한 교육 실적만 인정하며, 온라인 교육, 외부 교육기관을 장기요양기관에 초청하여 실시한 교육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또한 2018.6.1. 관련 고시 개정으로 교육기관이 '공단 또는 지자체 외 외부기관'으로 변경되었고 2021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에 반영함에 따라 2021.2월부터는 공단의 평가설명회 참여 등은 직원역량강화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Q17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나, 코로나 19로 인해 대면(집합) 교육이 취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평가에서 인정되나요?

- 코로나19로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 이상으로 대면교육이 취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무관련 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기존의 실시계획, 수료증, 교육비 납부 영수증 등 온라인 이수와 관련된 객관적 근거자료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이수증이 발행되지 않는 교육의 경우 교육 주최기관에서 발송한 실시 관련 공문, 교육주최기관 홈페이지 주소, 교육이수 일자, 교육내용, 교육시간, 이수자 등을 별도 기록으로 확인 가능하여야 인정
- 단, 온라인교육을 이수한 경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무시간으로는 인정되지 않음
- 게시위치 :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알림·자료실/공지사항/게시물번호 60606 “코로나19 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한시적 적용방법(5차) 안내”

Q18

2019년 4월에 입사한 직원이 2020년 5월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상태로 퇴사한 경우 어떻게 평가되나요?

- 2019년 4월 입사자가 2018년 5~12월에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했다면, 2018년 검진을 받은 것이므로 2019년에 건강검진을 받아야 연 1회 건강검진 실시 평가기준을 충족합니다. 만약 2019년 1~4월에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했다면, 2019년 건강검진도 연 1회 실시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2020년도 건강검진 수검기간이 남은 시점에서 퇴사하였으므로 2020년 건강검진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8(7) 건강검진

Q19

동일법인·동일대표 장기요양기관의 직원이 겸직을 시작한 경우 또는 퇴사 후 한 달 뒤 재입사한 경우, 신규직원에 준하여 건강검진 자료를 확인하나요?

- 동일법인·동일대표 장기요양기관의 직원이 겸직한 경우, 기존직원으로 보고 연 1회 실시한 검진 자료를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 퇴사 후 재입사한 직원의 경우, 신규직원으로 보고 입사 전 1년 이내 관정일 및 발행일이 확인되는 건강검진 자료를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8(7) 건강검진

Q20

직원검진 결과에 따라 2차검진 등 조치여부가 평가에 반영되나요?

- 2021년 시설평가매뉴얼에는 직원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기관의 조치사항을 보는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직원의 건강한 급여제공을 위해 평가지표9(8)에서 직원의 근골격계 질환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확인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8(7) 건강검진

Q21

2019년 3월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들어가서 2020년 6월 복직한 직원이 있는데 2019년 검진 내역이 있어야 하나요?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전·후 근무한 기간이 속해있는 연도는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 2019년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은 2019년 1월~3월까지 근무하였고 2020년 6월 이후 근무하고 있으므로 2019년과 2020년의 건강검진 결과가 확인되어야 평가 시 인정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8(7) 건강검진

Q22

요양보호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특수건강검진 및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걸로 평가항목 충족이 되나요?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특수건강검진 및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항목에 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및 판정의 5개영역이 확인될 경우 해당 평가기준이 충족됩니다.

CCMD-19

시설급여 평가지표8(7) 건강검진

Q23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병원 방문을 최소화하다보니 2020년 직원 건강검진 실시가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국가건강검진기간이 2021년 6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시설급여 평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또한 2021년 상반기에 2020년 해당 건강검진을 실시했을 경우 2021년의 건강검진 결과도 중복 인정됨을 안내드립니다.
- 다만, 신규입사자 건강검진은 기존과 동일하게 근무시작일자까지 입사 전 1년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제출이 필요
-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진단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 불가
- 게시위치 :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알림·자료실/공지사항/게시물번호 60606 “코로나19 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한시적 적용방법(5차) 안내”

시설급여 평가지표9(8) 직원건강관리

Q24

매년 9월에 전 직원 근골격계 질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9월 이후 입사자 또는 9월 이전 퇴사자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 검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평가 시 인정되나요?

- 모든 직원의 근골격계 질환 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평가 기준을 충족하므로 9월 이후 입사자도 해당연도 안에 검사를 해야 평가기준을 충족합니다.
- 기관에서 계획한 근골격계 질환 검사일 이전에 퇴사한 직원의 경우, 퇴사한 해당연도의 근골격계 질환 검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10(9) 직원복지향상

Q25 퇴직 후 14일 이후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 인정되나요?

- 퇴직급여 지급은 퇴직일자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직원복지향상을 위해 지급기한을 준수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10(9) 직원복지향상

Q26 상여금 및 휴가비를 제공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이뤄지는데 직원포상에 해당되나요?

- 기관에서 운영 중인 정기적인 상여금 및 휴가비는 2가지 이상 복지제도 운영으로 인정됩니다.(복리후생과 포상을 구분하여 시행할 필요 없음)
- 2021년 평가매뉴얼에 복지제도에 대해 운영규정 및 사업계획 따라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므로 상여금 및 휴가비 제공 사항에 대해 기관의 운영규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운영함이 확인되고 이에 따른 복지제도를 직원이 알고 있다면 인정됨을 안내드립니다. (평가지표1(1)운영규정 중 기준①의 규정항목① 참조, 평가지표2(2)운영계획 및 평가 기준①에 따라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필요함을 참조)

시설급여 평가지표10(9) 직원복지향상

Q27 지급받은 가산금으로 직원에게 해외연수를 제공했는데 동지표 기준④에 따른 복지제도와 중복 인정되나요?

- 평가지표10(9) 직원복지향상 기준③의 가산금 사용은 일회적이고 비정기적인 사항으로 가산금에 따른 직원 처우개선내역은 동지표 기준④의 복지제도 운영내용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11(10) 직원권익보호

Q28 근로계약서 체결여부에 대해 계약서도 확인하나요?

- 평가지표11(10)직원권익보호 기준①은 평가 시, 근로계약 체결당사자 기준 등을 기록으로는 확인하지 않고 종사자와의 면담을 통해 근로계약 체결 여부, 근로계약 필수항목 숙지여부, 근로계약에 따른 보수(임금) 지급 및 보수명세서 제공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면담으로 평가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12(11) 지역사회자원 활용

Q29 자원봉사 주 1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주 1회'는 달력상의 1주를 의미하며 간격 7일을 넘겨도 인정되나(예를 들어 첫째 주는 월요일 수행, 둘째 주는 목요일 수행 인정) 주를 넘기는 경우에는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12(11) 지역사회자원 활용

Q30 동일대표자가 여러 개의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개의 시설에 수급자를 모두 모아놓고 자원봉사 활동(종교 활동)을 하는 경우 인정되나요?

- 병용규정에 어긋나며, 기관 단위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한 개 시설만 자원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CCMD-19

시설급여 평가지표12(11) 지역사회자원 활용

Q31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외부인 방문금지를 하고 있어 자원봉사 등록을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나요?

- 코로나19로 외부인이 기관에 출입하는 것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자원봉사자 등 외부 인력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경계'이상의 단계에서 방문하지 못하여 평가기준을 미달한 경우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단, '주의'이하의 단계로 변경될 경우 변경된 익월부터 지표 적용함을 안내드립니다.
- 게시위치 :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알림·자료실/공지사항/게시물번호 60606
"코로나19 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한시적 적용방법(5차) 안내"

시설급여 평가지표13(12) 시설기준

Q32

30명 이상 노인요양시설입니다. 프로그램실을 이용하지 않을 때 자원봉사자실로 겸용한다면 평가 시 시설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의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을 준수하는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된 평면도를 기준으로 현장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에 따라 ‘입소자 30명 이상’ 노인요양시설은 자원봉사자실과 프로그램실을 별도로 운영해야 하므로 시설기준 미준수로 평가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14(13) 특별침실

Q33

특별침실에는 이용자가 없을 때도 침대 및 기타 옷장 등 생활용품 모두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나요?

- 평상 시 특별침실을 일반 수급자가 사용하는 경우 또는 이용자 없이 빈 방으로 두는 경우 모두 특수상황 발생 즉시 특별침실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침대 등 용품을 갖추어 운영해야 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15(14)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Q34

와상 어르신만 있는 층에도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하나요? 다른 층에는 계단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 와상 수급자만 있는 층이어도 계단출입구, 외부출입구가 있다면 잠금장치를 갖추고,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어야 평가기준을 충족합니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외부출입구는 배회수급자의 실종예방을 위해, 계단출입구는 수급자의 낙상방지를 위해 각각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비상구로 지정된 출입통로의 문도 자동열림장치 기능이 있는 잠금장치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 아울러, 주방 등 화재 위험이 있는 곳도 수급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시설 내에서 주방으로 출입자체가 차단되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한 경우 주방에서 나가는 외부출입구의 자동열림장치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 단, 엘리베이터로만 통하는 외부출입구의 경우는 비상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미설치 시 예외적으로 인정

시설급여 평가지표15(14)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Q35 온·습도계, 환기장치는 침실마다 설치해야 하나요?

- 온·습도계는 층별로 1개 이상 구비해야 하며, 환기장치는 시설 내 1개 이상 있을 시 인정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15(14)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Q36 주방과 물리치료실은 지하 1층, 침실은 지상 2층부터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방에 문이 설치되어야 하나요?

-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주방 잠금장치가 설치되어야 평가 기준을 충족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15(14)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Q37 안내표지판, 위치도, 표찰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 안내표지판은 수급자(보호자) 및 방문객이 각 층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알 수 있도록 각 층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 1층-면회실, 식당, 원장실 / 2층-간호사실, 톨립마을(201~205호), 장미마을(206~210호), 물리치료실 / 3층-옥상)
- 위치도는 해당 층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되어 있어야 평가기준을 충족합니다.
- 실별 표찰은 방문에 부착하여 해당 실이 어떤 용도의 방인지 명시하는 것입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15(14)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Q38

피난안내도가 각 층에 비치되어 있고 피난안내도에 해당 층에 모든 것이 표기 되어 있다면(예: 침실, 물리치료실 등) 별도의 시설 안내 위치도를 두지 않아도 되나요?

- 수급자(보호자) 및 방문객 등이 알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각 층의 위치도, 각 실별 표찰이 부착되어 있어야 평가기준을 충족합니다. 층마다 해당 층에 대한 모든 시설이 피난안내도에 표기되어 있다면 위치도를 두지 않아도 현장을 확인하여 인정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16(15) 낙상예방 환경조성

Q39

목욕실 외 화장실 세면대 옆에 설치된 샤워기에도 안전손잡이를 설치해야 하나요

- 화장실에 설치된 샤워기라도 그 용도가 실제로 수급자에게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안전손잡이가 있어야 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16(15) 낙상예방 환경조성

Q40

직원만 사용하는 화장실에도 안전손잡이를 설치해야 하나요?

- 평가 시 기관 내부 안전손잡이 설치여부는 '수급자의 접근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따라서 잠금장치 설치 등 직원만 사용하는 화장실로 확인된다면 안전손잡이 설치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16(15) 낙상예방 환경조성

Q41

병원과 병용하여 사용하는 물리치료실의 안전손잡이는 어떻게 평가되나요?

- 병용공간 또한 수급자가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시설급여 평가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의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에 따르면 의료기관 일부를 시설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물리(작업)치료실, 조리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16(15) 낙상예방 환경조성

Q42

안전한 성분의 미끄럼방지 스프레이를 통해 미끄럼 방지처리를 해도 되나요?

- 낙상예방을 위한 미끄럼방지 처리는 **목욕실, 화장실 등 낙상위험이 높은 공간의 바닥전체**에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있음을 확인하며 미끄럼방지 타일, 미끄럼방지 매트, 페인트, 스프레이 모두 가능하나 해당 기준에 대해서는 미끄럼방지 기능을 하는지 현장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17(16) 식품위생관리

Q43

위탁급식을 하는 경우, 조리실 근무 직원의 복장 및 조리실 위생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 일체의 식사와 간식의 조리준비, 조리, 그릇세척 등 전 과정을 외부 위탁업체에 의뢰 및 제공하여 조리실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방 및 집기류의 소독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 식사와 간식의 조리준비, 조리, 그릇세척 등 일부만 위탁하고 일부는 시설에서 제공할 경우, 조리실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방 및 집기류 소독을 주 1회 이상 실시하였는지 기록 및 현장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18(17) 감염관리활동

Q44

서비스 종류에 따른 전·후 손 씻기 기준이 궁금합니다.

- 수급자가 위생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감염예방을 위해 기본적으로 '수급자 1인당 서비스 제공 전·후마다' 손을 씻어야 합니다. 식사(간식)보조, 기저귀 교환, 소변 비우기, 욕창간호, 의료폐기물을 다룬 후, 쓰레기를 다룬 후 등을 관찰합니다.
- 식사·간식 보조의 경우는 '수급자 개인'이 아닌 '식사·간식 보조'라는 서비스 항목 전·후로만 손을 씻어도 인정합니다. 다만 식사·간식 보조에서도 오물이 묻은 경우는 반드시 손을 씻는지 관찰하여 평가합니다.
- 장갑을 낀 경우, 반드시 장갑을 벗고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사용하여야 평가기준을 충족합니다. 장갑을 낀 채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18(17) 감염관리활동

Q45

동일법인·동일대표자 기관 내 전원 시 수급자의 결핵검진 포함
검진자료를 대체하여 인정하는데 양로원도 포함되나요?

- 동일법인·동일대표자의 기관 내 전원하는 수급자는 서비스 연속성을 전제 하에 인정하고 있어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에 한하여 인정됨을 안내드립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18(17) 감염관리활동

Q46

현재 사용하지 않는 물품(산소마스크, 드레싱세트 등)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소독장부가 기재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시설에 비치된 간호비품의 소독여부, 보관 및 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지표로서, 현재 사용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수급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품의 소독, 보관 및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18(17) 감염관리활동

Q47

EM 소독제로 실내외 자체소독을 실시하는 경우도 인정되나요?

- 평가지표18(17) 기준④에 따라 자체소독은 2021.1월까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전문소독제(소독에 사용하는 상품화된 의약외품으로써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제품)를 사용해야 하므로 락스, 세제, EM 소독제 등은 불인정합니다.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6 소독의 방법
- 평가지표18(17) 기준⑤에 따라 일상소독은 기관의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에 따라 수급자 생활환경에 대해 매일 실시하는지 확인하며, 이 때 적절한 소독제는 차아염소산나트륨(락스 등 염소계 소독제), 소독용 알코올 등으로 이 외 소독제는 제품설명서에 소독의 효능이 확인된다면 인정합니다.
※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매뉴얼」 내 감염병 예방관리 매뉴얼

시설급여 평가지표18(17) 감염관리활동

Q48 수급자 생활실 내 화장실 세면대에도 손세정제를 비치해야 하나요?

- 평가지표18(17)감염관리활동 기준①에 의해 직원의 위생적인 급여제공을 위해 기관 내 세면대에 손세정제를 비치해야 합니다. 다만, 손세정제 비치로 치매 등 수급자의 안위가 위협될 것이 예상될 시, 직원별 휴대용 손세정제(손소독제아님) 구비 등으로 급여제공 시 손세척이 가능한 대안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생활실 내 세면대는 손세정제가 비치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18(17) 감염관리활동

Q49 일상소독 시 사용하는 소독제에 클리넥졸액(글루티랄농축액 / 방역용살균소독제) 제품을 사용해도 가능할까요??

- 평가지표18(17) 기준⑤에 따라 일상소독은 기관의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에 따라 수급자 생활환경에 대해 매일 실시하는지 확인하며, 이 때 적절한 소독제는 차아염소산나트륨(락스 등 염소계 소독제), 소독용 알코올 등으로 이 외 소독제는 제품설명서에 소독의 효능이 확인된다면 인정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18(17) 감염관리활동

Q50 손세정제에 비누가 포함되나요?

- 평가지표18(17) 감염관리활동 기준①번은 기관 내 모든 세면대에 손세정제를 비치하여 손씻기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손세정제는 물로 세척 가능한 계면활성제를 의미하며 비누도 물을 통한 세정작용이 되기 때문에 인정됨을 안내드립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19(18) 감염병관리

Q51 결핵 검사에는 흉부 영상검사, 객담검사 등 여러 가지 검사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만 해도 인정되나요?

- 흉부 영상검사, 객담검사 모두 가능하며, 결핵 검사의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건강진단기관 발행 건강진단서로서 결핵 검사의 내용과 그 결과(판독)가 확인된다면 인정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19(18) 감염병관리

Q52 **와상 수급자도 무조건 결핵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 모든 수급자에게 '결핵 검사를 포함한 건강진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평가기준을 충족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19(18) 감염병관리

Q53 **등급외자로 입소 시 감염병 진단 자료를 제출했고, 입소 이후 장기 요양등급이 나왔습니다. 감염병 진단 자료를 새로 제출해야 하나요?**

- 등급외자라도 결핵검진을 포함한 감염병 검사는 입소일부터 적용하여 등급외자 입소 당시 제출한 자료로 인정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20(19) 소방시설

Q54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를 병설로 운영 중인 기관입니다. 소방점검은 하나로 작성해도 되나요?**

- 병설기관 전체 점검 후 하나로 작성하여도 무방하나, 급여종류별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점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21(20) 전기가스설비

Q55 **매월 외부업체에서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하고 있어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3년에 한번만 점검하는데, 인정되나요?**

- 매월 외부업체에서 전기설비를 점검하고 있으므로 기준 2번 '매월 점검'은 충족합니다.
- 또한 외부업체가 법적대행업체로 확인되는 경우 기준 1번 '연 1회 점검'도 충족합니다. 다만 법적대행업체가 아닌 경우 전기안전공사, 법정대행업체에서 실시한 연 1회 점검이 확인되어야 기준 1번을 충족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21(20) 전기가스설비

Q56

자가용 전기설비가 설치된 기관입니다. 자가용 전기설비 일 경우는 3년에 한번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도 된다고 하는데 평가에서 인정되나요?

-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법적 기준보다 강화하여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전기안전점검을 연 1회 받지 않은 경우 불인정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21(20) 전기가스설비

Q57

선임된 안전관리자에 의한 점검이 무슨 뜻인가요?

- 전기가스설비21(20) 기준①의 경우 일전에는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에 의한 정기점검을 인정했으나 2021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기준으로 2021.2월부터는 한국전기안전 공사, 한국 가스 안전공사, 또는 법적 대행업체에 의한 점검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동지표 기준②의 경우 매월 하는 점검으로 기관의 직원이나 외부업체, 외부인 중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22(21) 재난상황대응

Q58

기관에서 선택한 1가지 재난상황(화재)에 대한 매뉴얼이 있으며, 그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면 인정되나요?

- 2021년 평가매뉴얼에 제시된 재난상황 중 1가지 이상의 재난상황에 대한 매뉴얼을 구비하고, 그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는지 기록을 확인하여 평가하며, 화재에 대한 매뉴얼 및 훈련도 인정합니다.
- 다만, 화재 이외 다른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서도 매뉴얼을 구비하고 이에 대한 훈련도 실시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22(21) 재난상황대응

Q59

재난상황대응 훈련 시 참여 못 하거나 이후에 들어온 신규 직원의 경우 추가 훈련을 실시해야하나요?

- 재난상황 대응 훈련의 참석률은 확인하지 않으나 모든 대상자가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반기별 1회 이상 훈련 참여를 권고 드립니다.
- ※ 추후 평가 시 직원 무작위 선정을 통해 면담 예정

시설급여 평가지표22(21) 재난상황대응

Q60

입소시설과 주야간보호가 병설인 경우 시설과 주야간보호 종사자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위소방대를 조직하여 재난상황 대응훈련을 실시해도 되나요?

- 입소시설과 주야간보호 병설기관에서 자위소방대를 함께 조직하여 재난상황 대응훈련을 한 경우 평가대상 기관별 수급자와 종사자가 참여한 훈련실시자료(일자, 시간, 장소, 참가자, 내용, 사진)가 확인되어야 인정 가능합니다.

COVID-19

시설급여 평가지표22(21) 재난상황대응

Q61

코로나 19 관련 재난상황대응훈련을 훈련이 아닌 교육으로 진행해도 될까요?

-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경계'이상 단계에서는 예외적으로 도면(피난안내도)를 이용하여 재난상황 매뉴얼에 따라 수급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별 임무 및 역할, 훈련 문제점 발굴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교육 및 토론형식의 도상훈련을 실시하고 관련 자료(일자, 시간, 장소, 참가자, 내용, 사진)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 게시위치 :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알림·자료실/공지사항/게시물번호 60606 "코로나19 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한시적 적용방법(5차) 안내"

시설급여 평가지표23(22) 응급상황대응

Q62 목걸이 형태의 응급상황 알람장치(응급벨)도 인정되나요?

- 평가에서는 기관 내부에 응급상황 알람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각 침실, 화장실, 목욕실에 각각 1개 이상 응급상황 알람장치('위치 확인이 가능한' 응급벨 또는 인터폰)가 설치되어 있고, 정상 작동해야 평가기준을 충족합니다. 수급자에게 목걸이 형태로 제공한다면 수급자의 위치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24(23) 야간보호

Q63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시설장이 야간에 근무하고 점검일지를 작성한 경우 인정되나요?

- 해당 기관의 인력으로 신고된 사람 중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가 야간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의 [별표5] '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따르면 '입소자에 대한 상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직원의 근무체제를 갖추되, 특히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시간대에는 입소자 보호 및 안전유지를 위하여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24(23) 야간보호

Q64 야간근무처리지침에 2020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를 그대로 반영하여 2시간마다 점검사항을 담았을 경우 야간점검일지에 2시간마다 점검하는 내용이 없을 경우에 인정되지 않나요?

- 평가지표24(23) 야간보호 기준②의 야간근무지침은 기관의 운영사항에 맞게 반영함을 확인하므로 근무실시 항목에 두시간마다 점검하는 내용까지 반영이 되었다면 동지표 기준③에 점검시간 및 안전점검내용과 관계된 내용이므로 그에 따른 수행을 하고 있는지 평가 시 확인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24(23) 야간보호

Q65 야간근무 지침 중 준비확인 확인자에 관해 문의합니다.

- 평가지표24(23) 야간보호의 기준②는 야간근무지침을 마련하여 비치하고 있는지를 야간근무지침 표준(안) : 근무준비, 준비확인, 근무실시, 초동대처, 당직점검 등의 확인사항을 통해 평가하며, 기준③은 야간점검일지에 일자, 점검시간, 수급자상태, 안전점검내용, 점검자의 항목을 통해 평가 시 확인함을 안내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야간근무지침 표준 참고(2020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에 관한 내용으로 기준②, ③에 대해 참조 목적으로 첨부했고 반영의 정도는 기관의 운영 사항에 따르므로, 자세한 반영을 위한 야간근무지침 표준에 대한 세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25(24) 수급자의 알권리 보장

Q66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정보게시 항목 중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입소계약서(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를 의미하나요?

- 노인장기요양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의 정보가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정보게시 항목 중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은 운영규정 중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즉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합니다.(예 : 표준약관 등)
- ※ 게시경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기관 로그인/나의 블로그

시설급여 평가지표26(25) 수급자(보호자) 참여강화

Q67 문자, 카톡, 유선을 통해 수급자(보호자) 상담 진행 시 평가에서 인정되나요?

- 모든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담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는지 기록으로 평가하며 일자, 상담직원, 상담대상자, 상담내용이 확인되어야 평가기준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문자, 카톡, 유선으로 상담을 실시하더라도 확인사항(일자, 상담직원, 상담대상자, 상담내용)을 포함한 기록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26(25) 수급자(보호자) 참여강화

Q68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급여에 반영할 때, 모든 수급자에 대해 1회 이상 급여에 반영해야 하나요?
 상담이 아닌 보호자 간담회, 자체 만족도조사 등에서 나온 의견을 수용하여 급여에 반영해도 인정되나요?

- 상담 결과 조치사항 또는 욕구변화 등이 있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급여에 반영하면 평가기준을 충족합니다. 상담 외에 의견수렴, 만족도 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의견을 반영한 경우도 인정합니다.
- 다만 반영 내용이 인지기능 프로그램과 여가 프로그램의 의견수렴 결과 반영과 중복된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26(25) 수급자(보호자) 참여강화

Q69 보호자와의 소통을 위해 보호자 간담회를 해왔었는데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이를 수급자 간담회로 대체할 수 있나요?

- 기관 내에 거주하는 수급자가 아닌 보호자에게 기관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목적으로 이를 위해 소식지 발송이나 SNS 게시, 정기적 보호자 회의 개최 등의 노력을 했는지 평가합니다. 따라서 수급자 회의는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대면방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비대면 방법을 통해 소통노력을 해야 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26(25) 수급자(보호자) 참여강화

Q70 간호사실 일부 공간에 칸막이와 잠금장치를 설치해서 상담실로 사용한다면, 상담실로 인정되나요?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의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시설기준 외 별도의 공간에 상담실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시설기준 외에 실을 추가로 둔 경우, 시설기준 외의 실을 상담실과 겸하여 사용하면 인정합니다.

(예시) 시설기준에 따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사무실, 요양보호사실, 자원봉사자실, 의료 및 간호사실 중 1개 이상을 갖추어야 함 → 간호사실을 갖추었으며 추가로 요양보호사실도 있는 경우, 간호사실을 상담실과 겸하여 사용한다면 평가기준을 충족

Q71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지역사회 행사 참여 또는 보호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를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코로나19로 인하여 감염병 위기경보수준이 '경계'이상으로 지역사회 행사 참여 및 외부인 참석 행사를 개최하지 못 할 경우 해당내용에 대한 기존 실시계획과 실시연기·취소 등과 관련한 내·외부 공문 및 공지(안내)사항 발송 등 기관에서 조치한 종합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인정합니다.
- 게시위치 :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알림·자료실/공지사항/게시물번호 60606
“코로나19 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한시적 적용방법(5차) 안내”

Q72

각 방마다 ㄱ·ㄷ자 형태의 칸막이가 구비되어야 하나요?

- 침실에 이동식 칸막이 1개 이상 구비 또는 침대마다 커튼을 설치해야 하고, 칸막이나 커튼은 '수급자의 전신이 가려져야' 평가기준을 충족합니다.
- 수급자의 전신이 가려지는 칸막이의 형태는 침상의 배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벽에 한 쪽 면이 붙어있는 침상의 경우 ㄱ자 형태의 칸막이로 가려질 수 있으나, 방 중간에 위치한 침상의 경우 양 옆과 아래를 가려야 전신이 가려지므로 ㄷ자 형태의 칸막이로 가려야 합니다.
- 각 침실마다 일자형 칸막이를 여러 개 구비하고 ㄱ·ㄷ자 형태를 만들어 전신을 가릴 수 있다면 평가기준을 충족합니다.
- 다만 각 침실에 일자형 칸막이 1개만 두고, 서비스 제공 할 때 다른 침실에 있는 일자형 칸막이를 가지고 와서 ㄱ·ㄷ자 형태를 만들어 쓰는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28(27) 존엄성 및 사생활 보장

Q73

수급자의 침실 출입구에는 수급자 성명을 '홍○동' 형식으로 부착했는데, 개인서랍장, 물병, 의복 등 개인물품과 응급벨 수신기에도 수급자 이름을 부착해야 하나요?

- 평가 시 침실 출입구에 수급자 성명 부착 여부를 확인하며 성명은 '홍○동' 형태인 경우 인정합니다. 수급자 개인물품, 응급벨 수신기 등 다른 부분에서의 성명 부착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29(28) 노인인권보호

Q74

와상상태이며 인지가 양호하지 않은 수급자 중 보호자가 없어 본인에게 노인인권보호 지침을 제공한 경우 인정되나요?

- 수급자에게 노인인권보호 지침을 제공한 경우, 인지가 양호한 자에게 제공하여 현장에서 확인될 경우 인정합니다.
- 인지가 심하게 저하된 수급자의 경우, 본인에게 주어도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으므로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제공한 것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인정합니다. 다만 보호자가 전혀 없어 본인 제공만 가능한 경우라면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29(28) 노인인권보호

Q75

노인인권교육을 인터넷으로 이수하는데 별개로 따로 교육을 실시해야 하나요?

-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였는지 평가하며, 교육방법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으나 확인사항(수급자 : 교육일시, 강사, 교육내용, 교육방법, 참석자(서명미확인), 종사자 : 교육일시, 강사 교육내용, 교육방법, 참석자(서명))이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 또한 교육내용이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므로 학대예방 관련 교육도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추가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 다만, 법적기준에 따른 이수방법은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알림·자료실/공지사항/게시물번호60545 참조 또는 지자체 문의 필요

시설급여 평가지표29(28) 노인인권보호

Q76

해당 분기에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이미 마친 경우에도 신규입사자 및 신규 입소자의 교육을 진행해야 하나요?

- 평가지표29(28)노인인권보호 기준② 모든 직원이 분기별로 노인인권 및 학대 예방교육 실시여부에 대해 확인하며 신규입사자의 경우 평가지표7(6)인적자원 개발의 기준②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포함한 급여제공지침 교육이 이뤄져야합니다. 동지표 기준③은 모든 수급자의 분기별 노인인권 및 학대 예방교육 실시여부에 대해 확인하며 신규 입소자의 경우 동지표 기준 ①의 노인인권보호지침에 대해 보호자(또는 인지기능 양호한 수급자)에게 제공한 기록으로 같음하여 인정합니다.
- 또한 퇴사일, 퇴소일이 속한 분기는 교육 실시여부에 대해 평가에서는 확인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29(28) 노인인권보호

Q77

신체제재 시, 보호자에게 제재 시작 전 한번만 통지하면 되나요? 제재를 할 때마다 통지를 해야 하나요? 또는 보호자에게 급여 제공계약서에 서명을 받을 때 제재동의서를 받아도 되나요?

- 신체제재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일괄적으로 받은 동의서의 경우 통지로 볼 수 없습니다.
- 수급자의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사유 발생 시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가족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했는지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 확인사항 : 수급자명, 수급자상태(제재사유), 제재일시, 제재자, 제재방법, 통지대상자, 통지일시, 통지방법
- 해당 제재 사유가 발생한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만약 제재가 종료된 후에 다시 제재를 해야 할 경우 다시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최초로 통지한 뒤 동일한 사유가 계속 유지되어 제재를 하는 경우는 통지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29(28) 노인인권보호

Q78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 구체적으로 제재는 어디까지 해당되나요? 예를 들어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침대난간을 올리기, 휠체어에서 미끄럼방지를 위한 안전벨트를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되나요?

- 불가피하게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한 모든 경우에 대해(침상난간 올리기, 휠체어 안전벨트, 휠체어 식판 등 포함)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가족 등에게 통지했는지 확인합니다. 이 때 확인하는 '내용'은 경과기록이 아닌 제재에 대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 단, 침상난간, 휠체어 안전벨트, 휠체어 식판의 항목은 낙상위험성을 가진 수급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제재로 입소 시 제재시작으로 인정되며 해당 내용에 대해 제재관련 확인사항 및 가족들에게 통지여부 등을 기록으로 확인합니다.(타 억제대는 사유발생 여부를 먼저 확인하며 그에 따른 억제대 제재 시작과 통보에 관한 기록을 확인)

시설급여 평가지표29(28) 노인인권보호

Q79

비위관(L-tube)을 손으로 빼는 행동을 반복해서 신체제재를 적용하는 경우, 식사시간마다 가족에게 통지해야 하나요?

- 해당 제재 사유가 발생할 시 통지해야 하며, 만약 제재 사유가 종료된 이후 다시 제재를 해야 할 경우 다시 통지해야 합니다.
- 다만, 최초로 통지한 뒤 동일한 사유(예 : 비위관을 손으로 빼는 행동을 계속함)가 계속 유지되어 제재를 하는 경우는 최초 통지를 확인하여 인정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29(28) 노인인권보호

Q80

억제대를 최초로 시행했을 때 보호자에게 통지했고 현재도 동일한 억제대를 하는 상황이면 매 해마다 통지하지 않아도 되나요?

- 통지 간격에 대한 평가기준은 없으나 원활한 기관운영을 위해 기관의 운영방침에 맞추어 시행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또한 동일한 억제대 사용이 동일한 사유를 의미하지 않으므로 동일한 억제대라고 하더라도 타 사유가 발생하거나, 기존사유가 중단된 후 동일한 사유로 재적용 시에는 가족 등에게 통지가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29(28) 노인인권보호

Q81

기준④번에서 수급자의 요구사항과 불만사항을 청취 및 조치 확인 시, 노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야 하나요?

- 수급자의 요구사항과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조치하는지 확인하며, 그 내용이 노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인정합니다.
- 다만, 요구사항이나 불만사항이 없다고만 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의견 청취여부가 회의록 등에서 확인되어야 인정합니다.

COVID-19

시설급여 평가지표29(28) 노인인권보호

Q82

수급자 또는 보호자 대표를 반기별 1회이상 운영위원회에 참여시켜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상반기(1,2분기) 운영위원회 개최를 못했는데 평가 시 괜찮나요?

- 코로나19 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 한시적 적용방법에 따라
- 2020.2~6월까지는 운영위원회 미실시 시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대표에게 의견 수렴하거나 보호자 대표에게 유선 등의 방법으로 의견 수렴하여 기관운영에 반영한 경우 인정합니다.
 - 2020.7월부터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다자간 영상회의, 다자간 메신저, 서면 등의 방법으로라도 개최해야하므로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수급자의 요구사항 및 불만사항을 청취하거나 개별적으로 수급자 대표 또는 보호자 대표에게 해당내용을 파악하여 조치했는지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 게시위치 :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알림·자료실/공지사항/게시물번호 60606 “코로나19 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한시적 적용방법(5차) 안내”

시설급여 평가지표30(29) 통합적 사정

Q83

huhn의 낙상위험도 평가 도구에서 와상어르신에 대한 표시가 궁금합니다.

- 위험도 평가 도구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제공해드리지 않으며, 논문 등에서 검증된 도구를 이용하여 낙상, 욕창 위험 등의 수준을 파악하였는지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따라서 위험도 평가도구의 구체적인 적용방법 및 해석 등은 관련 논문을 확인하시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30(29) 통합적 사정

Q84

인지기능 평가도구 CIST가 나왔는데 MMSE 이용해도 되나요?

- 인지기능상태 평가를 위한 평가도구는 기관의 운영상황에 맞춰 타당한 평가도구를 근거에 따라 이용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CIST 외에도 검증된 평가도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참고로, CIST는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도구로 타당성 검증 완료되었으며, 도구 이용 위한 교육 및 사용 방법은 중앙치매센터(☎1899-9988) 문의 바랍니다.
- 현재 MMSE의 적법한 사용방법, CIST 사용 전 교육수강 여부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확인할 사항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30(29) 통합적 사정, 31(30) 급여제공계획수립 및 제공

Q85

통합적 사정 및 급여제공계획수립 시 입소당일까지 실시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평가지표30(29) 통합적사정, 평가지표31(30) 급여제공계획수립 및 제공은 2021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에 따라 신규수급자의 경우 급여개시전(입소당일포함)까지 이뤄져야 합니다. 해당 내용의 경우 2019.6.12.에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 다만, 2021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사전공개에 따른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수급자가 주말 및 공휴일 등에 입소할 경우 마지막 휴일의 익일까지 작성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됨을 안내드립니다.

Q86

**시설급여 평가표표30(29) 통합적 사정, 31(30) 급여제공계획수립 및 제공
급여제공계획서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가 휴가인 경우 어떻게 하나요?**

- 통합적 사정 및 급여제공계획서 수립에 대해 가능한 해당직종을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유급휴가 등에 의한 미작성은 인정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Q87

**시설급여 평가표표30(29) 통합적 사정, 31(30) 급여제공계획수립 및 제공
등급외자로 입소하여 통합적 사정을 실시하고, 급여계획을
작성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장기요양등급이 나왔습니다.
통합적 사정, 급여계획을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 등급외자 입소 시에 욕구사정을 포함한 통합적 사정과 그에 따른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했다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후 반드시 통합적 사정과 급여제공계획을 재작성 하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 다만, 수급자의 상태와 욕구 등이 최초 입소 시점과 비교하여 변화가 있다면 욕구사정을 포함한 통합적 사정을 재실시하여 이를 반영한 급여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88

**시설급여 평가표표30(29) 통합적 사정, 31(30) 급여제공계획수립 및 제공
욕구사정을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갱신이나 등급변경
시에도 욕구사정을 작성하여 급여계획에 반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기존 수급자의 경우 통합적 사정 및 급여제공계획서는 연 1회 이상 작성되면 평가기준을 충족합니다. 다만, 갱신 또는 등급변경 후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상 수급자 상태 변화가 있고, 욕구의 변화 등이 파악된다면 욕구사정, 낙상위험, 욕창위험, 인지기능검사 등을 반영한 개별 급여계획을 재작성하여 현 수급자 상태에 맞게 급여제공이 이루어지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Q89

**시설급여 평가지표30(29) 통합적 사정, 31(30) 급여제공계획수립 및 제공
수급자가 계속 입소하다가 개인사유로 퇴소 후 며칠 뒤 재입
소한 경우 통합적 사정, 급여계획을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 재입소시 신규 수급자에 준하여 평가합니다. 따라서 **급여개시전(입소당일 포함)까지 통합적 사정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새로 작성해야 평가기준을 충족함을 안내드립니다.**

Q90

**시설급여 평가지표30(29) 통합적 사정, 31(30) 급여제공계획수립 및 제공
동일법인·동일대표의 시설급여기관으로 수급자 전원 시 통합
적 사정, 급여계획을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 동일법인·동일대표의 **시설급여기관**으로 전원 시 '결핵 검사를 포함한 건강진단(평가지표19(18) 감염병관리 참고)'을 제외한 그 외 평가지표는 신규 수급자에 준하여 평가합니다. 따라서 통합적 사정, 급여제공계획을 새로 작성해야 평가기준을 충족합니다.

Q91

**시설급여 평가지표30(29) 통합적 사정, 31(30) 급여제공계획수립 및 제공
수급자가 퇴소하지 않고 입원 후 퇴원한 경우 통합적 사정,
급여계획을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 입소한 수급자가 입원 후 퇴원한 경우 통합적 사정, 급여계획 재작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나, 수급자 상태에 따라 급여계획 변경 및 급여제공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 장기간 입원 후 복귀했다면 입원 전 상태와 비교하여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급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수급자가 적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욕구사정을 포함한 통합적 사정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변경된 급여계획을 세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시설급여 평가표31(30) 급여제공계획수립 및 제공

Q92

급여제공계획서를 장기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서 작성한 것만 인정하나요? 통보일 기준으로 확인하나요?

- 평가지표31(30)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제공의 급여제공계획서에 대해 2021년 시설평가에서는 장기요양기관업무포털, 기관 별도 전산, 별도 수기 기록지 등에 급여제공계획서에 대한 확인사항이 포함되면 모두 인정합니다.
- 다만, 전산의 경우 수급자별로 관리하며 개별 로그인을 통해서 관리가 되어야 하며 전산 및 수기기록지 모두 인지기능이 양호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한 후 서명을 받은 경우 인정됩니다(비대면의 방법으로 제공했을 경우 급여제공계획서 전문이 제공되었음이 증빙되어야 하며 추가로 유선상담이 필수로 이뤄져야 함).
- 아울러, 21년 평가 매뉴얼에서 상 급여제공계획서 공단 통보는 확인하지 않으며 급여제공계획서는 작성일 기준으로 확인함을 안내드립니다.

시설급여 평가표31(30) 급여제공계획수립 및 제공

Q93

급여제공계획서 당일 작성해야하는데 보호자에게도 당일 제공해야하나요?

- 급여제공계획서의 보호자 제공 시기는 원칙적으로 수급자에게 제공할 급여의 내용에 대해 급여제공 시작 전에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서명도 받아야 함을 안내드립니다(다만 당일 보호자의 부재 등으로 제공이 어려운 경우 사유가 급여제공계획서 제공에 대한 기록을 통해 확인될 시 평가 시 인정, 비대면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 우편물 발송기록 등으로 확인 가능함)

시설급여 평가지표31(30) 급여제공계획수립 및 제공

Q94

입소자 신규계약 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밤 입소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재발급 불가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열람신청 결재 늦음으로 당일 반영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21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의 평가지표31(30) 급여제공계획수립 및 제공 기준①은 기존 통합적사정 반영하여 급여제공계획서 작성에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추가로 반영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입소자 신규계약 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미지참, 늦은 입소 등으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재발급 및 열람승인이 불가하여 제공받기 어려운 경우 통합적 사정만이라도 반영하여 급여개시 전(입소 당일포함)에 급여제공계획서를 수립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위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미반영 사유를 급여제공계획서에 기록하여야 하며 이 경우, 추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공받았을 때 기존 급여제공계획과 다른 사유가 있을 시 반영하여 재수립해야 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31(30) 급여제공계획수립 및 제공

Q95

급여제공계획서 제공 시 보호자의 시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호자에게 급여계획서를 우편발송하고 유선으로 안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평가에서는 우편물 발송내역 및 상담기록 등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 다만, E-mail 전송(보호자의 E-mail임이 확인되어야 함), 문자 발송 및 SNS 메신저 제공도 인정되나 제공 시 급여제공계획서 전송을 전송했음과 제공 후 추가로 보호자에게 유선 안내하였는지 평가 시 확인하여 인정합니다.
- 비대면 제공 시 유선을 통해 추가 안내가 필수로 이뤄져야 하며 추가 안내를 문자 또는 이메일로만 한 경우는 불인정 합니다.
- 비대면 제공 시 제공에 대한 보호자 서명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32(31) 급여제공 결과평가

Q96

하반기 급여제공 결과평가 일정을 12월로 계획하고 있는데, 2018년 1월에 입소한 수급자에 대해 2018년 12월에 급여 제공 결과평가를 실시해도 인정되나요?

- 급여제공 결과평가는 반기별 1회 실시하므로 상반기에 입소한 수급자는 하반기에 결과평가를 실시하고 급여계획을 재작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면 인정합니다. 다만 일괄적으로 결과평가를 하는 것 보다 개별적으로 6개월 간격으로 급여제공 결과평가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32(31) 급여제공 결과평가

Q97

급여제공 계획 모니터링을 실시한 경우 급여제공결과 평가를 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 급여제공 결과를 평가할 경우 일자, 총평 또는 종합소견, 작성자가 확인되도록 관련 기록을 작성한 경우 인정합니다. 따라서 급여제공모니터링을 충실히 작성하여 급여제공 결과 평가의 확인 사항(일자, 총평 또는 종합소견, 작성자)이 확인되면 급여제공 결과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33(32) 사례관리

Q98

기관 운영을 시작한 달에도 사례회의를 실시해야 하나요? 월도중에 정원 변경 시 사례회의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 사례회의 실시 주기는 기관의 정원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30인이상 시설은 월 1회이상, 10인이상 30인미만 시설은 분기별 1회 이상, 10인미만의 기관은 반기별 1회 이상 사례회의를 실시하였는지 확인합니다.
- 사업개시월이나 정원변경 시 다음 달부터 정원에 따른 사례회의 실시주기를 적용합니다. 분(반)기의 마지막 달에 개시 및 정원변경이 있을 시 다음 분(반)기에 적용하며 변경 해당 분(반)기는 정원 변경 전의 주기에 의해 실시함을 확인합니다.
ex) 3월에 15명에서 35명으로 정원변경 시 1-3월까지는 분기 수행 4월부터 매월 실시 확인

시설급여 평가지표33(32) 사례관리

Q99 사례회의 시 회의 내용에 발언자를 반드시 적어야 하나요?

- 사례회의는 수급자의 욕구 및 문제를 해결하고 수급자의 특성이 반영된 급여제공을 위해 직종별 급여제공 직원이 각 1명 이상 참석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되 일자, 수급자명, 선정사유, 회의 내용, 회의결과, 참석자 항목을 기록하여야합니다.
- 수급자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직종 및 발언자명을 명시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33(32) 사례관리

Q100 사례회의 결과 반영 시 꼭 급여제공계획 변경을 해야 하나요?

- 30일 이내에 사례회의 결과를 급여에 반영해야하며 반영여부는 급여제공계획 변경 또는 급여제공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회의 내용 및 결과에 따라 급여제공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으며, 혹은 급여제공기록지에 급여에 반영한 내용을 단순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례회의 대상선정 사유 및 회의 내용, 결과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례관리 대상자는 다양한 문제나 욕구가 있어 도움이 필요한 수급자이므로 회의 결과를 급여에 반영할 수 없거나 급여변경이 필요하지 않는 수급자라면 사례관리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33(32) 사례관리

Q101 신규 입소자를 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해도 인정되나요?

- 사례회의 대상자는 다양한 문제로 여러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급자, 초기 입소하여 적응이 어려운 수급자 등입니다.
- 2021.1월까지의 급여제공계획이 세워지기 전인 신규 수급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사례회의를 거쳐 그 내용을 최초 작성된 급여계획에 반영했다면 평가기준을 충족합니다.

- 그러나 2021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에 따라 2021.2월부터는 신규 수급자에 대해 통합적사정 및 급여제공계획서 작성이 급여개시전(입소당일 포함)에 이뤄져야 하므로 사례회의 결과 반영에 대해 급여제공계획서 재작성 또는 급여제공기록지 작성으로 확인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33(32) 사례관리

Q102

신규수급자가 부적응으로 입소 하루 만에 퇴소할 때도 이용 종료 상담 및 연계기록지 제공을 수행해야 하나요?

- 평가지표33(32)사례관리 기준③ 연계기록지 작성은 신규수급자의 경우 30일 이내 퇴소로 급여제공계획수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시 미실시를 예외로 인정하는 사항이었으나 2021년 시설평가매뉴얼에서 신규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수립이 급여개시전(입소당일)까지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용종료 상담 실시 및 연계기록지 작성 및 제공이 필수로 이뤄져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 단, 주말 및 공휴일 등에 입소하여 아직 미작성인 경우 이용종료 상담 및 연계기록지 미제공 인정

시설급여 평가지표34(33) 수급자 청결서비스

Q103

목욕서비스 제공 시 목욕 전후에 바이탈 시인을 체크해야 하나요? 그리고 급여제공기록지에 목욕 전·후 상태를 기록해도 되나요?

- 수급자의 상태 작성 시 반드시 활력징후(혈압, 맥박, 체온 등)를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굴·입술·손톱 색깔, 피부손상 등 수급자의 신체 및 인지상태 등을 관찰하여,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별지 제 16호서식]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시설급여/단기보호)’의 작성방법을 참고, 목욕 제공 전·후 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이상없음, 얼굴 창백함, 오한 있음 등’으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단순 체크 불인정).

시설급여 평가지표34(33) 수급자 청결서비스

Q104

주 1회 목욕급여 제공 시 주 1회만 충족하면 시행요일은 지키지 않아도 괜찮나요?

- 주 1회 목욕을 매주 월요일 제공하다 사유가 생겨 수요일으로 바뀌 제공했다면 주 1회 목욕서비스제공은 인정되나 평가 시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는지 확인하므로 계획과 다르게 제공될 경우 사유가 확인되어야 인정합니다.
- 급여제공계획 확인사항 : 수급자명, 작성일자, 작성자, 장기요양 세부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세부제공내용, 횟수 또는 시간, 종합의견

시설급여 평가지표35(34) 식사제공

Q105

보건소 식단표를 따라 제공하되 죽을 먹어야 하는 수급자가 있어 식단표에 죽을 추가하여 제공하는 경우 인정되나요?

- 밥 대신 죽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수급자의 경우도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식사를 제공하되, 수급자의 욕구사정 결과 및 급여계획에 따라 씹는 기능이나 소화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태로 제공한다면 인정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36(35) 배설관리

Q106

등급외자로 입소하여 집중배설관찰기록표를 작성 후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장기요양등급이 나왔습니다. 집중배설관찰기록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 입소 당시 집중배설관찰기록표를 급여개시일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 작성한 등급외자 입소자가 입소 이후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집중배설관찰기록표를 재작성하는지 평가에서 확인하지 않습니다.
- 다만, 수급자의 배설상태 등이 최초 입소 시점과 비교하여 변화가 있다면 집중배설관찰기록표를 다시 작성하여 배설관리가 필요한 수급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36(35) 배설관리

Q107

수급자가 계속 입소하다가 개인사유로 퇴소 후 며칠 뒤 재입소한 경우 집중배설관찰기록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 재입소시 신규 수급자에 준하여 평가합니다.
- 따라서, 급여개시일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 집중배설관찰기록표를 새로 작성해야 평가기준을 충족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36(35) 배설관리

Q108

수급자가 퇴소하지 않고 입원 후 퇴원하여 기관으로 복귀한 경우 집중배설관찰기록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 입소한 수급자가 입원 후 퇴원한 경우 집중배설관찰기록표 작성에 대해 확인하지 않습니다.
- 다만, 장기간 입원 후 복귀했다면 입원 전 상태와 비교하여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급자가 적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배설양상의 변화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36(35) 배설관리

Q109

스스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도 집중배설관찰기록표에 대소변량을 기입해야 하나요?

- 평가지표36(35) 배설관리 기준①의 집중배설관찰기록표는 신규 수급자의 급여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72시간동안 매 시간 섭취 및 대소변량, 기저귀 및 옷 교환(옷에 배설 실수한 경우) 여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집중배설관찰기록표의 작성은 신규 수급자의 배설관리를 위한 상태 파악이 목적이므로 매시간 기록하여야 하며, 기저귀 미이용 시 시간대별 배설여부만 체크할 수 있지만 기저귀 사용중인 수급자는 배설한 시간대 기록과 배설량도 확인하여 기입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36(35) 배설관리

Q110 지체없이 기저귀를 교환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록하나요?

- 기저귀 교환 시간을 급여제공기록지 화장실이용하기(기저귀 교환)란에 기입하거나 기관 별도의 서식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 기저귀 교환 시간을 정하여 주기적으로 교환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36(35) 배설관리

Q111 병원에서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상태로 시설에 신규 입소한 수급자나 유치도뇨관 삽입 상태로 타 시설에서 저희 시설로 신규 입소한 수급자의 경우 진단서, 소견서 등을 받지 못해 욕구사정 기록지에만 작성하고 있습니다. '의사처방에 따라 유치도뇨관을 관리한다'는 기준③에 대해 평가 시 인정되나요?

- 병원에서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상태로 신규 입소한 경우, 병원에서 삽입한 것은 의사처방에 따라 삽입한 것이므로 별도의 처방전, 진단서 등이 없더라도 그 내용이 욕구사정기록지 등에서 확인되면 인정합니다.
- 타 시설에 있다가 입소한 경우, 연계기록지에 유치도뇨관 삽입에 관한 내용이 작성되어 있어도 인정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37(36) 욕창예방

Q112 욕창 고위험 수급자의 욕창발생 여부를 1일 1회 이상 관찰 기록해야 하는 항목에서 별도의 서식 없이 급여제공기록지에 욕창관리 체크, 욕창 발생여부 등 특이사항에 기록하여도 평가에서 인정되나요?

- 욕창발생 고위험 대상자의 욕창발생여부 관찰 기록은 급여제공기록지 욕창관리에 체크 후 특이사항에 관찰 결과를 기록 시 평가에서 인정됨을 안내 드립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37(36) 욕창예방

Q113

2시간마다 체위변경 실시내용 기록 시 체크리스트 양식으로 기록해도 인정되나요?

- 체위변경 시간이 기록되어야 하고, 횟수만 기록한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체크리스트 양식도 인정하며 체위변경 날짜, 시간, 급여 제공자가 확인되어야 하며 실제 서비스 제공 시 수급자 체위변경 시 참고 가능하도록 적용한 체위도 기록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37(36) 욕창예방

Q114

통합적 사정의 욕창위험도 평가 시 욕창발생 위험이 있는 대상자의 욕창위험도 분기별 파악 중 1회로 중복인정 되나요?

- 분기별로 1회 이상 욕창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였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평가지표30(29) 통합적 사정에 따른 연 1회 이상 욕창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것을 포함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분기별 각 1회 이상 실시한 내용이 확인된다면 평가지표37(36) 욕창예방의 기준①과 평가지표30(29) 통합적 사정의 기준③을 모두 인정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37(36) 욕창예방

Q115

평가도구 욕창 위험군으로 분류된 수급자라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분, 간호사 판단 하에 체위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분들도 체위변경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수급자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고 체위변경이 가능하다면 관련 자료를 확인하며, 2시간마다 체위변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다만, 편마비가 있는 수급자, 인지기능저하로 체위변경을 하지 않는 수급자 등 체위변경에 도움이 필요한 수급자가 욕창 위험군으로 분류되지 않았을 경우 스스로 체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현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38(37) 욕창관리

Q116

욕창이 있으나 스스로 거동이 가능한 수급자도 체위변경 의무대상인가요?

- 욕창이 있는 수급자는 최소 2시간(수면시간 포함)마다 체위변경을 실시하나, 스스로 거동이 가능하여 체위변경이 필요치 않다면 관련 근거를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욕창이 있는 수급자에게 욕창방지 보조도구를 제공하여 주 1회 이상 욕창변화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 이미 욕창이 발생한 수급자도 평가지표37(36) 욕창예방을 위한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욕창 위험도 평가 결과 욕창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로 확인되는 경우 분기별 1회 이상 욕창위험도 파악, 욕창발생 예방을 위한 노력을 제공해야 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38(37) 욕창관리

Q117

욕창관리기록의 '조치내용'은 무엇을 작성해야 하나요?

- '조치내용'은 욕창관리에 대해 조치한 내용 기록 시 인정하며, 촉탁의 진료, 병원 진료, 보호자 연락, 간호(조무)사 처치 등 욕창관리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39(38) 간호 및 의료서비스

Q118

월 중 입소자는 해당 월에 계약의사 진찰을 2회 이상 받지 못해도 문제가 없나요?

- 입소일 이전에 이미 계획된 계약의사 방문일정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평가 시엔 입·퇴소일은 제외하여 확인하나 입소자 건강관리를 위해 최대한 진료를 제공받도록 노력해주시길 권고드립니다.

Q119

코로나19 관련 계약의사 방문이 어려운 경우 평가 반영이 어떻게 되나요?

- 진찰이 어려운 경우 위기경보 경계단계 이상 외부인 출입통제를 전면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관련 자료가 확인되면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는 인정합니다(예를 들어 해당 기간에 계약의사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의 방문은 금지되었으나 보호자 또는 자원봉사자 방문은 허용 등 적용기준이 다르다면 불인정).
- 하지만 이 경우에도 수급자의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며 관련 사항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2020.3월부터 계약의사 유선진찰 및 처방에 대한 허용안이 마련되어있습니다. (협약의료기관 의사는 해당사항 없음)
- 게시위치 :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알림·자료실/공지사항/게시물번호 60606
“코로나19 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한시적 적용방법(5차) 안내”

Q120

코로나19 관련 계약의사 유선진찰을 수행하는데 원외처방전 미발급 시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도 인정되나요?

- 계약의사 유선진찰의 경우 원외처방전이 발행되지 않더라도 평가지표39(38) 간호 및 의료서비스 기준① 계약의사나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기관을 방문하여 모든 수급자를 월 2회 이상 진찰하고 기록한다에 의해 유선진찰 내용을 간호일지 등에 적어주셔야 하며 해당 기록을 확인하여 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합니다.
- 게시위치 :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알림·자료실/공지사항/게시물번호 60606
“코로나19 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한시적 적용방법(5차) 안내”

시설급여 평가지표40(39) 투약 및 약품관리

Q121

약국에서 구입한 상비약(타이레놀, 가스할명수 등)은 의사 처방 없이도 투약 가능한가요?

- 시설평가 시 약국에서 구입한 상비약을 수급자에게 투여 시 의사의 처방이 반드시 있었는지 확인하지 않으나 상비약의 경우도 약품 사용 설명서를 숙지하시거나 의사와 상의 후 제공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40(39) 투약 및 약품관리

Q122

수급자 외출, 외박 시 지침약에 대해 투약기록을 하나요?

- 현재 2021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에서는 외출 및 외박 대장을 별도 지표로 평가하지 않으나 수급자가 외출, 외박하여 기관에서 투약 뿐 아니라, 프로그램, 계약의사 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관련 근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의 안전관리와 기관 내 감염예방관리를 위해서도 외출, 외박에 대한 기록관리가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40(39) 투약 및 약품관리

Q123

어르신별 투약시간이 비슷하고 시간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별 또는 침실별 투약 시간이 달라야 하나요?

- 평가에서 투약기록은 실제 제공시간을 기록하는지 평가하며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여러 인원이 투약을 제공하는 경우, 투약제공자가 여러 인원인 것이 확인된다면 개인별 또는 침실별 투약시간이 동일하여도 인정합니다.
- 다만, 소수의 직원이 다수의 수급자 모두에게 동시에 투약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동일한 시간으로 작성했을 경우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40(39) 투약 및 약품관리

Q124

간호사실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간호사실 안에 있는 약품보관함에 잠금장치가 있어야 하나요?

- 특정장소인 간호사실에 약을 보관하며 간호사실 안에 있는 약품 보관함에는 잠금장치가 없다면, '간호사실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서 '사용할 경우에만 개방'되어야 평가기준을 충족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41(40) 기능회복훈련

Q125

모든 수급자에게 3가지 영역 훈련을 실시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르신들의 건강상태에 따라 별도의 훈련계획이 서면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수급자의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기능회복훈련(신체기능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각 영역별 훈련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급여제공계획서에 기능회복훈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훈련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기능회복훈련내용은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 관리해야 합니다.
- 영역별 훈련 중 수급자 상태에 따라 급여제공계획서에 반영을 하지 못한 경우 외상상태 등 근거가 확인될 시 인정되며 계획에 반영된 영역도 평가 당일 수급자의 상태 변화 등으로 제공을 하지 못할 시 관련 근거를 확인하여 미실시에 대해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41(40) 기능회복훈련

Q126

기능회복훈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는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건가요?

- 해당 기준은 평가 시 급여제공계획서에 반영된 영역에 따라 관찰로써 확인하나 급여제공계획서에 기능회복훈련에 대한 내용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수급자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누락의 경우 모든(3가지)영역에 대한 기능회복훈련 실시여부를 확인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42 물리치료

Q127

신규입소자의 경우 물리(작업)치료의 평가 및 계획을 급여개시전(입소당일)까지 수행해야하는데 물리치료사가 연차인 경우 어떻게 하나요?

- 2021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의 물리(작업)치료 지표는 물리(작업)치료사만 할 수 있도록 직제 규정을 하고 있어 물리(작업)치료사가 1명만 있어 휴가로 대직이 불가능할 경우는 휴가 후 복귀한 첫 날에 신규입소자의 물리(작업)치료 평가 및 계획 수립을 실시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됨을 안내드립니다
- ※ 물리(작업)치료 지표도 급여제공계획수립 및 제공지표와 같이 주말 및 공휴일 등에 입소한 수급자에 대해 마지막 휴일의 익일 작성 예외 인정

시설급여 평가지표42 물리치료

Q128

물리(작업)치료사 인력이 중간에 바뀌었는데 물리치료 계획 및 평가를 다시 수립해야 하나요?

- 평가지표42 물리치료에서 평가 및 계획 수립은 수급자의 상태에 따른 것으로 단순 인력변경의 사유로 재수립할 필요는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42 물리치료

Q129

물리(작업)치료사 연차 시 예정된 작업치료를 못하게 되는데 평가 시 괜찮나요?

- 물리(작업)치료사의 휴가 등에 따른 부재로 급여를 미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제공기록지 등에 기록하면 평가 시 확인하여 미실시에 대해 인정하나 기관은 최대한 다른 날에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지속적으로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물리(작업)치료에 대한 계획을 재수립하는 등 기관 상황에 맞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42 물리치료

Q130

물리(작업)치료사가 시설 내 1명인 경우 치료 평가 및 계획 수립, 물리치료 실시를 못함에 대해 연차휴가임이 확인되면 평가 시 충족되는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도 휴가에 포함되나요?

- 휴가에 대해서 인정하는 범위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 12조(근무인원수 산정방법)에 따른 유급 휴가(일 근로시간 8시간 미만 소요된 유급사유 의 경우 미해당)인 경우 인정합니다.
- 출산휴가는 근무인원이 없음에 따른 미실시를 인정하지만 육아휴직은 대체인력(직종은 물리(작업)치료사)을 통해 실시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42 물리치료

Q131

수급자가 거부하거나 병원에 입원하여 계획에 따라 물리(작업) 치료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평가되나요?

- 물리(작업)치료 계획에 따라 실시해야 하나, 수급자의 거부 또는 병원입원 등의 사유로 실시하지 못했다면 물리치료일지, 급여제공 기록지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42 물리치료

Q132

‘물리(작업)치료에 대한 평가’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 기준①번의 물리(작업)치료에 대한 평가는 물리(작업)치료를 하기 전, 물리(작업)치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자료를 얻기 위해 물리 치료사가 수급자의 신체기능을 파악하는 평가를 의미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42 물리치료

Q133

수급자 현원 증가(11월 17명, 12월 30명)로 인해 12월 5일부터 30인 이상으로 물리치료사 고용하였습니다. 11월 입소한 수급자는 물리치료 평가가 30일 초과되었는데 불인정하나요?

- 12월부터 물리치료사 의무배치 기관으로서, 기존 입소자는 물리 치료사 고용월 이내에, 신규 입소자는 급여개시 전(입소당일 포함)에 평가와 계획수립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43(41) 인지기능증진서비스, 44(42) 여가활동서비스
그룹별로 프로그램 제공 후 프로그램 일지를 그룹별로 작성
해야하나요? 통합하여 기록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Q134

- 프로그램 계획은 분류된 그룹별로 프로그램명, 목표, 대상자, 내용, 횟수 등을 기록해야하며, 프로그램 실시 기록은 일자, 시간, 진행자, 참석자명, 내용을 기록하며 그룹별 실시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일지의 작성 방법은 기관 운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프로그램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계획하고 실시하였는지 확인되어야 인정함을 안내드립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43(41) 인지기능증진서비스, 44(42) 여가활동서비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 주야간보호를 병설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실에서 프로그램을 같이 제공하고
있는 경우, 급여종별로 일지를 작성해야 하나요?

Q135

- 병설로 운영하는 기관에서 급여종별로 수급자를 모아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더라도, 급여종류별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 실시한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획서·프로그램일지 작성은 급여종류별로 따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43(41) 인지기능증진서비스

주 3회 인지기능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별도 진행이 어
려워 한 장소에 모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룹별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하나요? 3개 그룹인데 그룹별로 같은 날에 시간을
달리 진행해도 되나요? 프로그램 내용은 모두 달라야 하나요?

Q136

- 그룹별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평가기준을 충족하며, 그룹별 프로그램 제공시간이 같더라도 각 그룹별로 프로그램 제공 여부가 확인된다면 평가 시 인정합니다.
- 인지기능검사결과 등에 따라 그룹별로 분류하여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프로그램명은 같더라도 목표, 세부내용은 달라야 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43(41) 인지기능증진서비스, 44(42) 여가활동서비스

Q137 인지기능 프로그램의 그룹과 여가 프로그램의 그룹이 동일해도 되나요?

- 수급자의 개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지기능 프로그램의 그룹화는 '인지기능검사결과 등'에 따라서, 여가 프로그램의 그룹화는 '수급자의 상태와 욕구 등'을 반영하여 분류합니다.
- 예를 들어, 인지기능검사(MMSE 등) 결과를 토대로 그룹을 나누는 것은 인지기능 프로그램의 그룹화에 해당합니다. 다만, 여가 프로그램에서도 프로그램 목표와 내용에 따라 인지기능을 고려하여 나눌 필요가 있다면 인지기능검사 결과도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43(41) 인지기능증진서비스, 44(42) 여가활동서비스

Q138 명절이나 공휴일이 포함된 주에도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실시해야 하나요?

- 수급자에게 다양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 평가기준에 명시된 대로 활동 주기를 충족해야 인정합니다. 프로그램 실시에 대해 명절, 공휴일 등의 미실시 사유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43(41) 인지기능증진서비스, 44(42) 여가활동서비스

Q139 인지프로그램은 사회복지사, 여가프로그램은 영양보호사가 실시해도 되나요?

- 2021년 시설평가 매뉴얼에서는 프로그램 제공자에 대한 자격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43(41) 인지기능증진서비스, 44(42) 여가활동서비스

Q140

매번 똑같은 사유(거부, 와상, 인지장애 등)로 프로그램에 불참하는 어르신들은 매번 불참사유에 대해 기록을 해야 하나요?

- 최초 불참사유 작성 후 신체, 인지 상태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된 경우(완전와상, 인지장애 등), 최초 작성 내용으로 확인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모든 수급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급자의 요구 등을 파악하여 음악 듣기 등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계획 및 제공을 권고합니다.
- 수급자 본인의 거부인 경우, 매번 수급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설득해서 수급자가 가능한 한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므로 사유가 계속 기록되어야 하며, 수급자의 요구 및 의견수렴과 사례회의 등에서 논의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44(42) 여가활동서비스

Q141

여가 프로그램을 주 1회 제공 시 그룹별로 나눠서 해야 하나요? 주 1회 실시한 것을 전체 그룹에 적용해도 인정되나요?

- 여가 프로그램은 수급자의 상태와 욕구를 반영하여 그룹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각 그룹별로 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평가기준을 충족합니다.
- 따라서,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한 번 실시한 것을 각 그룹별로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공생은 그룹화 여부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함

시설급여 평가지표44(42) 여가활동서비스

Q142

생신잔치는 여가활동서비스로 인정되지 않나요?

- 여가활동서비스는 수급자의 상태에 맞는 다양한 여가활동 욕구 충족을 위해 수급자 상태와 욕구에 맞게 그룹화하여 진행하도록 하고 있어, 특정 수급자를 위한 행사로 진행되는 생일잔치 활동은 여가활동서비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44(42) 여가활동서비스

Q143

기관에서 시행하는 활동 중 생신잔치, 종교활동, 이미용봉사가 프로그램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해당 활동은 프로그램 관련 평가지표의 방향성에 따라 프로그램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질의하신 활동에 대해 평가지표 방향성에 따른 관련 지표를 안내하오니 참조바랍니다.

기관 활동	생신잔치		종교활동	이미용제공
관련 평가지표	평가지표27(26) -①, ② 지역주민 참여 행사	평가지표12(11) - ①~③ 자원봉사	평가지표12(11) - ①~③ 자원봉사	평가지표12(11)- ①~③ 자원봉사 (이미용 비급여항목 수급자 미청구 확인)

- 한 활동에 대해 여러 지표 및 기준 중복적용 시 불인정

COVID-19

Q144

시설급여 평가지표43(41) 인지기능증진서비스, 44(42) 여가활동서비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외부강사 출입을 제한하고 내부직원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나 감염확산의 우려로 수급자가 거부하는 등 그룹별 프로그램 제공이 어려운데 이 경우 프로그램을 미실시해도 인정되나요?

-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프로그램 제공 그룹을 소규모로 재편성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 게시위치 :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알림·자료실/공지사항/게시물번호 60606
“코로나19 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한시적 적용방법(5차) 안내”

시설급여 평가지표45(43) 등급현황

Q145

입소 중 수급자 병원 입원 시 입원기간은 연속급여제공으로 반영이 되지 않나요?

- 기관의 휴업, 업무정지 기간은 급여제공 월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수급자 입소 중 병원 입원 기간은 급여제공 기간에 포함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46(44) 욕창현황, 47(45) 유치도뇨관현황, 48(46) 배설기능현황

Q146

욕창현황 관련 평가 방법 중 전산자료는 무엇인가요?

- 시설급여 평가지표46(44) 욕창현황, 47(45) 유치도뇨관현황, 48(46) 배설기능현황의 평가방법 중 '공단 전산자료'는 '인정조사 및 갱신, 등급변경에 따른 인정조사 내역 등'을 의미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46(44) 욕창현황, 47(45)유치도뇨관현황

Q147

지표 44번 욕창현황에서 2019년 12월 급여제공 수급자 기준으로 욕창 발생된 어르신 및 치료수급자가 없으면 채점기준에서 우수로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평가지표46(44) 욕창현황의 기준①의 경우 기관에서 욕창이 발생한 수급자가 없다면 욕창이 발생한 수급자가 3%미만이며, 평가기준②의 완치된 수급자를 확인할 경우에도 욕창이 발생한 수급자가 없으므로 해당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하여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우수)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평가지표47(45) 유치도뇨관 현황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시설급여 평가지표47(45) 유치도뇨관현황

Q148

계약의사 진료시 수급자의 부종 및 소변량 감소 등에 따라 유치도뇨관 필요 소견으로 계약의사가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경우 삽입률에 포함되나요?

- 병원 등에서 응급상황 및 치료 목적으로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경우는 삽입률에 산정하지 않습니다. 계약의사 진료 및 소견에 따라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경우도 치료목적에 해당하므로 삽입률에 산정하지 않습니다.